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5나30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5나3046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합8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의료법인 A병원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 선고 2017. 2.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합8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또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C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D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E은 피고의 차남으로 1999년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며, F은 피고의 장남으로 G정신병원과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다. 피고는 2009.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피고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따른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는 원고의 대표자인 E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 21, 23, 33 내지 38, 39,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P, K의 각 증언 및 제1심법원의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가 E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인 K은 자신이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매주 2회 원고와 G정신병원을 왕래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G정신병원 경리부장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G정신병원측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10)는 H병원의 직원 L이 2009. 6. 10. 대리로 발급받은 것인데, 그 위임장의 위임사유란에는 '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L은 2014. 11. 18.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주 방문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후 L은 2015. 7. 27.자 확인서(을 제34호증) 및 2015. 8. 27.자 확인서(을 제43호증)에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13. E이 원고의 관리이사 V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출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26,245m²와 J 임야 5,345m²를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 및 출연재산계약서(갑 제2호증의 6 내지 9)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피고의 출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출연사유서 및 출연재산계약서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와 마찬가지로 K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며, 그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L이 2009. 6. 10.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중 하나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F 역시 위 고소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의 의사와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무상출연한 안양시 만안구 I 및 J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증여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자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한편 2012년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무상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 및 출연재산계약서가 재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의 배우자 P이 2012년 9월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연락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4. 11. 17. 발행된 피고에 대한 의사소견서에는 '피고가 2009년 이후 치매 증상이 발병하여 현재 간헐적인 기억력 장애 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날인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143호 약정금 사건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갑 제14호증의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고, 2016. 8. 17. 각 인증서(을 제63호증의 1, 2)를 작성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4차 변론기일에 실시한 을 제69호증(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에 나타난 피고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내지 7년 전인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날인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4. 25.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K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의 원무과장인 M가 사용하여 온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과 별개의 도장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2009. 6. 29.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 작성 이전부터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신축할 당시 설계비, 건축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를 작성한 이후에 증여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 따른 피고의 증여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무상출연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별지